

선체 및 일반용 단강품

관련 규칙	시행 일정
규칙 2편 1장 601.	2021년 7월 1일 이후 건조계약 되는 선박 또는 승인 신청되는 재료

○ 개정 사유

1. 선체 및 일반용 단강품(합금강)의 일부 화학성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.
2. 규정되지 않은 화학성분을 제조자가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.

○ 개정 사항

1. 선체 및 일반용 단강품(합금강)의 일부 화학성분(C, Mn, Cr, Mo, Ni) 범위를 승인 실적을 반영하여 새롭게 규정함.

○ 영향 분석

- ✓ 안전, 보안 또는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 및/또는 기여
: N/A
- ✓ 순치수 또는 총치수에 미치는 영향
: N/A